

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 고시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「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」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30일
목포해양경찰서장


1. 개정이유

-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-01호 「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 수역」 재 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개정

2. 주요내용

- 가.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394호)에 따른 재검토 기한 재 설정
- 나. 부칙 일부 개정(종전의 목포해양경찰서 고시 제 2017-01호 폐지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4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해양경찰서(해양안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사유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 및 문의처

- 주소 : 우편번호 58623 / 전남 목포시 청호로231

산정동 1110-7(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)

- 연락처 : 061-241-2251(경장 김용희), FAX : 061-241-2951

- 전자우편 : forever00k@korea.kr. 끝.